

## 안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

제정 1980. 6. 20 규칙 제 164호  
개정 1982. 6. 9 규칙 제 245호  
개정 1984. 2. 14 규칙 제 296호  
전부개정 2013. 12. 31 규칙 제137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원경찰법」 제5조의2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안양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징계의 관할) 안양시에 배치한 청원경찰(이하 “청원경찰”이라 한다)의 징계사건은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.

제3조(징계의 종류) 징계의 종류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, 징계의 효력은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

제4조(징계처분) 안양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.

1. 「청원경찰법」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
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
3.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 <2013. 12. 31 규칙 제1378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